

□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단속(처분청) : 교통지도과, 자치구(자치구)

○ 관련 법령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
○ 제21조(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)

-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·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 5. 27., 2012. 5. 23., 2013. 3. 23., 2013. 8. 6., 2014. 5. 21., 2015. 1. 6., 2017. 3. 21., 2017. 10. 24., 2018. 8. 14.>

○ 제26조(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)

-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. 28., 2017. 10. 24., 2019. 8. 27.>
9.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

○ 제85조(면허취소 등)

-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(터미널사업·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)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·허가·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. 다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

○ 제43조(사업면허·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)

-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11. 27.>

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[별표 3]

<개정 2020. 4. 14.>

사업면허취소·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

(제43조제1항 관련)

2. 개별기준

가.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

위반내용	근거 법조문	처분내용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26.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85조 제1항 제21호			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(훈령·예규 등)

○ 제44조(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)

- ③ 법 제21조제1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09. 12. 2., 2012. 11. 23., 2014. 7. 29., 2014. 12. 5., 2016. 1. 6., 2018. 2. 12., 2019. 12. 26.>

[별표 4] <개정 2018. 2. 12.>

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

(제44조 관련)

1.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

가. 일반적인 준수사항

- 6)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, 이를 항시 지도·감독해야 한다.

가)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

만, 제5호·제8호·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5. 27., 2012. 2. 1., 2012. 5. 23., 2013. 3. 23., 2013. 8. 6., 2014. 1. 28., 2014. 5. 21., 2015. 1. 6., 2017. 3. 21., 2017. 10. 24., 2018. 8. 14., 2018. 9. 18., 2020. 6. 9.>

21.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

○ 제88조(과징금 처분)

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2. 1., 2013. 3. 23.>

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·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제94조(과태료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4.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

다. 성류소에서 주자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	운행	운행
	정지	정지
	(5일)	(10일)

○ 제46조(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)

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. <개정 2009. 11. 27.>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, 사업지역의 특수성,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3. 3. 23.>

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[별표 5]

<개정 2020. 4. 14.>

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

(제46조제1항 관련)

1.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(단위: 만원)

위반내용	관계 법조문	위반 횟수	과징금의 액수							
			여객자동차운송사업							자 동 차 대 여
			시 내 버	사 외 버	일 반 택	개 인 택	전 세 버	특 수 여	수 요 응	

		스 니 농 어 촌 버 스 마 울 버 스	스	시	시	스	객	답 형	여 사 업
18. 법 제21조 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 85조 제1항 제21호								
다.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		1차	20	20	20	20	20	20	
		2차	40	40	40	40	40	40	

○ 제4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법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
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[별표 6]

<개정 2020. 4. 14.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9조 관련)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회	2회	3회 이상
다. 법 제2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경우				
1) 안전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94조제3항제4호	50	50	50
2) 1)에 따른 준수사항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94조제3항제4호	10	10	10